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호 162

2018년 11월 22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8년 10월 15일, 성중기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29일

다. 상정일자 :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(2018년 11월 22일 상정, 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성중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매년 폭염 및 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보호 및 시설 안전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, 특히 자치구가 지정·운영하는 쉼터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.
- 그러나 '서울 안전누리 홈페이지'를 제외하고는 쉼터 관련 정보 의 서비스가 부족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큰 바, 폭염 및 한파 등 재난 발생시 대피소의 간판을 설치하고 서울시 홈페이지 및 동별 주민자치센터에 대피소 위치 및 운영 관련 정보를 게시하 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(1) 대피소 운영 및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홍보를 위해 대피소의 간 판을 설치하고, 대피소의 위치를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과 동별 주민자치센터 등에 게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43조제3항, 제4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4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○ 본 개정안은 폭염 및 한파 쉼터 관련 안내정보 게시가 부족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피소 간판을 설 치하고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대피소 위치, 운영관련 정보를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주요내용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(대피소의 관리 등) ① 시장 및 <u>자치</u>	제43조(대피소의 관리 등) ① <u>자치</u>
<u>구청장</u> 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	<u> 구청장(이하 "시장 등"이라 한다)</u>
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	 ,
하여야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시장 등은 대피소 간판을 여러 사람이
	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부착하여 시민
	이 대피소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
	<u>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④ 시장 등은 대피소를 이용하는 시민이
	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
	요령을 게시하고,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
	앱과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대피소의
	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
	<u>다.</u>

먼저 폭염과 관련하여 올해 서울의 경우, 7월 12일 오전 11
 시부터 폭염주의보¹)가 발효되어 7월 16일 오전 11시 폭염경보²)로 대체된 이후 8월 16일 기준으로 최고기온은 39.6℃, 폭염특보일수(폭염주의보, 폭염경보)는 38일을 기록하면서 역대

¹⁾ 일최고기온이 33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
²⁾ 일최고기온이 35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
최고의 폭염강도와 폭염일수를 보였음.

[표] 폭염특보(기상청)

종류	폭염 주의보	폭염 경보
기준	일 최고기온 33℃ 이상인 상태가 2일	일 최고기온 35℃ 이상인 상태가 2일
기판 	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	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
[표] 최근 5년간 연도별 최고기온 및 폭염일수(서울시)

구분	'14	'15	'16	'17	'18	40 45 45 40 40
최고기온 (℃)	35.8	34.4	36.6	35.4	39.6	38 목염특보일수 35
폭염특보 (일)	7	9	41	33	38	の近 36 25 元 35 20 冊 34 15
폭염일수 (일)	10	8	24	13	28	33 - 10 32 - 5
열대야 일수(일) ¹⁾	6	9	32	19	26	31 년 15 16 17 18 연도

주1) 열대야 일수 : 밤 최저기온(당일18:01~익일09:00) 25℃ 이상인 날의 일수

- 또한,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폭염관련 구조·구급활동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온열질환³⁾ 신고접수건수는 2015년 79건, 2016년 83건, 2017년 56건, 2018년 8월 15일 기준 395건으로 이 역시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였음.
- 이와 같이 기록적인 폭염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회는 지난 9월 18일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"법")을 개정한바 있음.
- 한편, 서울시 대피소 등 현황을 살펴보면, 민방위대피소 3,216개소, 지진옥외대피소 1,509개소, 이재민 임시주거시

³⁾ 열사병, 열탈진, 열경련, 열부종, 열실신 등

설 965개소, 무더위쉼터 4,069개소('19년 추정)를 설치·운영 중이며.

[표] 대피소 관련 현황

연번	대피소명 (쉼터)	개소수	지정 법적근거	안내표지판 설치 법적근거
1	민방위대피소	3,216	민방위기본법 제15조	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
2	지진옥외대피소	1,509	「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」(행정안전부 지진 방재관리과)	「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 리지침」 (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)
3	이재민 임시주거시설 (지진겸용포함)	965	재해구호법 제4조의 2	행정안전부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
4	무더위쉼터	4,069 ('19.추정)	범정부 폭염 종합대책 ('18.행정안전부)	범정부 폭염 종합대책 ('18.행정안전부)

- 이 중 무더위쉼터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복지본부에서 "2018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계획(인생이모작지원과-5747, '18.5.16.)" 을 수립하여 폭염 대책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
- 금년에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일반쉼터 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, 연장쉼터는 평일·휴일 9시부터 21시까지 경로당, 복지관, 동주민센터 등 지정된 3,342개소 ('18.8.27. 기준)의 쉼터를 운영한 바 있음.

□ 무더위쉼터 운영 개요

○ 운영기간: '18. 5.20.(일)~9.30(일), 약 4개월간

※ 폭염 대책기간과 동일하게 운영

○ **운영시간** : **일반쉼터**(평일 09시~18시), **연장쉼터**(평일·휴일 09시~21시)

○ 지정장소 : 경로당, 복지관(사회·노인), 동주민센터 등

○ 쉼터 지정현황 : 3.342개소

('18.8.27. 기준)

총계	일반 무더위쉼터					일반 + 연장 무더위쉼터			
동계	소계	경로당	복지관	주민센터	기타	소계	경로당	복지관	주민센터 등
3,342	3,342	2,535	159	375	273	641	397	43	195

○ 또한, 행정안전부 관리지침⁴)에 따라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,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현장기능을 유지하고 불편신고 요령을 안내했으며, 안전디딤돌 앱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도 이뤄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.







[그림]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및 홍보 사진

○ 따라서 동 개정안은 폭염 및 한파 등에 대비한 대피소 위치 및 운영 관련 정보 게시의무,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활용방

^{4) 2018}년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지침, 행정안전부

안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폭염 및 한파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 측면에서 볼 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 임.

- 다만, 중앙정부에서는 폭염 관련한 대피소를 "무더위쉼터"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 있으며, 지난 9월 법개정으로 "폭염"뿐만 아니라 "한파"도 자연재난에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또한 현행 조례 제43조의2에 이미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고 있는 바,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 조례 제43조에 추가되는 대신 제43조의2에 반영하는 것이바람직하다 판단됨([표] 참조).

[표] 본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43조(대피소의 관리 등)	제43조(대피소의 관리 등)	제43조(대피소의 관리 등)
① 시장 및 <u>자치구청장</u>	① <u>자카장(이</u>	① 자자구청장
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	<u>하 "시장 등"이라 한다)</u> —	
민이 긴급하게 대피할		
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		
비하여야 한다.	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시장 등은 대피소 간	<삭 제>
	판을 여러 사람이 보기	
	쉬운 주변의 장소에 부	
	착하여 시민이 대피소를	
	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	
	게 하여야 한다.	
<u> <신 설></u>	④ 시장 등은 대피소를	<삭 제>
	이용하는 시민이 잘 볼	
	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	
	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	

제43조의2(지진대피소 안 내표지판 등의 설치) ①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 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 소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 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 착하여야 한다. 이 경우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진대피소의 위치를 쉽 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다. 시하고,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과 주민자치센 터 등을 통해 대피소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3조의2(지진대피소 안 대표지판 등의 설치) ①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 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 안내 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. 이 경우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진대피소의 위치를 쉽 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의 설치)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지진대피소·무더위쉼터·한파쉼터 안내표지판을 각각 해당시살나
무더위쉼터·한파쉼터 안 내표지판을 각각 해당 사살나
내표지판을 각각 해당 시설나
사살나
사살나
②
②
②
②
 지진대피소·무더위쉼터· 한대라
한計
한計
. ,, , , , ,
쉼터와 한파쉼터의 경우
는 이용하는 시민이 잘
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
간과 불편신고 요령을
게시하여야 한다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6. 토론요지 : 없 음

- 7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- 8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- 9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- 10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- 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162 제 안 일 자 : 2018년 11월 22일

제 안 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지난 9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개정 시 "폭염"뿐만 아니라 "한파"도 자연재난에 포함시킨 것을 반영하고, 중앙정부에서 폭염 관련 대피소를 "무더위쉼터"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골자

○ 지진대피소뿐만 아니라 무더위쉼터·한파쉼터에 안내표지판을 설 치 또는 부착(안 제43조의2).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 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3조제1항 중 "자치구청장(이하 "시장 등"이라 한다)"을 현행 과 같이 "자치구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안 제3항 및 안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안 제43조의2제1항 전단 중 "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"를 "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지진대피소·무더위쉼터·한 파쉼터 안내표지판을 각각 해당 시설이나"로 하고, 같은 조 안 제2 항 중 "지진대피소의"를 "지진대피소·무더위쉼터·한파쉼터의"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의 경우는 이용하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43조(대피소의 관리 등) ① 시장 및 <u>자치구</u> 청장은 재난발생시 관 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·정비하여야 한 다. ② (생 략) <신 설>	제43조(대피소의 관리 등) ① <u>자치구</u> 청장(이하 "시장 등"이 <u>라 한다)</u>	제43조(대피소의 관리 등) ① 자치구 청장
제43조의2(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) ①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 진대피소나 그 출입구 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 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 다. 이 경우 해당 시설	한다. 제43조의2(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) ①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시설	제43조의2(안내표지판 등의 설치)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지진대 피소·무더위쉼터·한 파쉼터 안내표지판을 각각 해당 시설이나-

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 다.

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 해 지진대피소의 위치 를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.

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 다.

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 해 지진대피소의 위치 를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.

<단서 신설>

<u>.</u>
2
-지진대피소·무더위
쉼터·한파쉼터의
다
만, 무더위쉼터와 한파
쉼터의 경우는 이용하
는 시민이 잘 볼 수 있
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
편신고 요령을 게시하

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의2제1항 전단 중 "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"를 "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지진대피소·무더위쉼터·한파쉼터 안내표지판을 각각 해당 시설이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지진대피소의"를 "지진대피소·무더위쉼터·한파쉼터의"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의 경우는 이용하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안 현 행 제43조의2(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제43조의2(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) ① 시장은 지진대피소 등의 설치) ① 시장 및 자치구청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 장은 지진대피소·무더위쉼터·한파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 쉼터 안내표지판을 각각 해당 시 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 다. ----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진대피소의 위치 ----- 지진대피소·무더위 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쉼터·한파쉼터의-----한다. <단서 신설> ----. 다만, 무더위쉼터와 한파 쉼터의 경우는 이용하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 다.